

의안번호	2211118
의 퇴 인	김예지 의원
회 답 일	2025.8.14.
추 계 번호	25C3425

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, 종합계획 등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199억 5,200만원(연평균 39억 9,000만원)으로 추계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 계	연평균
실태조사(안 제6조)	200	—	—	200	—	400	80
종합계획 수립·시행(안 제7조)	99	—	—	—	—	99	19.8
시청각장애인지원위원회(안 제20조)	9.6	9.6	9.6	9.6	9.6	48	9.6
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(안 제21조)	3,854	3,709	3,826	3,948	4,068	19,405	3,881
합 계	4,163	3,719	3,836	4,158	4,078	19,952	3,990

주: 합계는 단수 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 (실태조사)	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7조 (종합계획 수립·시행)	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9조 (참정권)	(제1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시청각장애인이 선거권, 피선거권, 청원권 등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 및 설비,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,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4	안 제10조 (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, 음성도서,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·보급하여야 함	의무규정
		(제3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		(제4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기구의 개발·보급과 제3항에 따른 연구 수행을 위하여 조사·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·대학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·연구를 위탁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11조 (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	의무규정
		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12조 (교육지원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나이,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및 보행·이동 등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		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에 특화된 교육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		(제3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인력 양성,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7	안 제13조 (자립지원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자립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	의무규정
8	안 제14조 (자조단체의 구성 및 지원)	(제1항) 시청각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통합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	재량규정
		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9	안 제15조 (의료 및 상담 등 지원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기능치료와 재활의료 및 건강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함	의무규정
		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	의무규정
		(제3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가족이 시청각장애인을 적절히 돌보는 데 필요한 정보,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	재량규정
10	안 제16조 (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 등 지원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이 영화관, 전시관, 박물관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·참여·향유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		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, 놀이기구,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		(제3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11	안 제17조 (소득보장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청각장애인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2	안 제18조 (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, 이동, 정보접근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람(이하 “시청각장애인 전문지원사”라 한다)을 양성·훈련하여야 함	의무규정
		(제3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청각장애인 전문지원사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13	안 제19조 (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교육의 위탁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양성과 훈련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	재량규정
		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14	안 제20조 (시청각장애인자문위원회)	(제1항)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시청각장애인 자문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	의무규정
		(제2항)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	의무규정
15	안 제21조 (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)	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함	의무규정
		(제3항)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의 규모 및 시청각장애인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16	안 제22조 (시청각장애인지원정보 시스템)	(제1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각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17	안 제24조 (시청각장애인의 국제 교류 및 협력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국제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자조단체와 협력하고, 필요한 정보 및 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 (실태조사)	○	○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2	안 제7조 (종합계획 수립·시행)	○	○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3	안 제9조 (참정권)	X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4	안 제10조 (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)	X	
5	안 제11조 (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)	X	
6	안 제12조 (교육지원)	X	
7	안 제13조 (자립지원)	X	
8	안 제14조 (자조단체의 구성 및 지원)	X	
9	안 제15조 (의료 및 상담 등 지원)	X	
10	안 제16조 (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활동 등 지원)	X	
11	안 제17조 (소득보장)	X	
12	안 제18조 (시청각장애인지원지원사)	X	
13	안 제19조 (시청각장애인지원지원사 교육 의 위탁)	X	
14	안 제20조 (시청각장애인지원위원회)	○	○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15	안 제21조 (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)	○	○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16	안 제22조 (시청각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)	X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17	안 제24조 (시청각장애인의 국제교류 및 협력)	X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 제9조~제19조, 제22조, 제24조에 대해서는 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
 - 참정권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(안 제9조)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편의 지원 규모 및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계가 어려움
 - 제정안에 따라 시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, 음성도서, 점자정보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·보급(안 제10조)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사업의 확대 및 추진 규모 등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－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“장애인 보조기기지원” 사업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이 해당 보조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음
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및 직업훈련(안 제11조), 교육(안 제12조), 자립(안 제13조), 자조단체의 구성(안 제14조), 의료 및 상담 등(안 제15조), 문화·예술·여가·체육활동 등(안 제16조), 소득(안 제17조)을 지원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확대 및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제정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고, 현재 제정안에 따른 지원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 규모 및 범위 등을 자세히 추정하기 곤란
 - －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다양한 장애인복지 사업([표 2] 참고)을 통하여 시청각 장애인도 직업훈련, 교육,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장애인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음
 - 또한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를 양성·훈련(안 제18조 및 제19조)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사업 계획 및 추진 규모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하고 양성·훈련 내용 및 방법, 교육과정 등에 대한 사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시청각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(안 제22조)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 처리 및 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구축·운영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- 제정안에 따라 시청각장애인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원(안 제24조)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의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제정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추계하기 곤란
 - －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“장애인단체 지원”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국제협력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

[표 2] 주요 시청각장애인 관련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내용	2025년도 예산
시청각장애인 전담기관지원	·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연구수행 지원, 시청각통역사 양성 및 지원체계 확립, 시청각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, 자조단체지원,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축수화, 축점화 기기 개발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관 지원	260
장애인 보조기기지원	·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 ·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(음성유도장치(음향신호리모콘), 음성시계, 신호장치(시각신호 표시기), 진동시계, 헤드폰(청취증폭기), 영상확대 비디오 시스템(독서확대기), 문자판독기(광학문자판독기), 녹음 및 재생장치) 지원	1,847
장애인단체	· 장애인단체의 목적사업 수행,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 지원 등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 지원 · 29개 장애인단체, 시각장애인중앙센터, 장애인편의증진센터, 장애인모니터링센터, 인권지킴이지원센터 등 지원	6,843
장애인 직업재활시설	·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지원	9,190
장애인연금	·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%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 지급	884,658

자료: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□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실태조사(안 제6조)

-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청각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본 추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4년 기준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 - 유사사례인 2024년에 실시한 “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”의 예산(2억원)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
 -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실시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, 개정안의 취지는 정기적으로 해당 조사가 실시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임
 - 추계기간(2028~2032년) 동안 단가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추계결과,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총 4억원(연평균 8,000만원)으로 추계

[표 3]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 계	연평균
실태조사(안 제6조)	200	-	-	200	-	400	8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종합계획 수립·시행(안 제7조)

-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인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2022년 보건복지부의 “제6차 장애인정책종합 계획 수립방안 연구” 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 - 해당 연구용역의 예산으로 9,900만원이 편성됨

- 2028년부터 제정안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것으로 가정하되, 추계기간 동안 연구용역 단가(9,900만원)는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□ 추계결과,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총 9,900만원(연평균 1,980만원)으로 추계

[표 4] 시청각장애인 종합계획 수립·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 계	연평균
종합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7조)	99	-	-	-	-	99	19.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시청각장애인자문위원회(안 제20조)

-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시청각장애인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회의수당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본 추계에서는 시청각장애인자문위원회 운영 시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
 - 제정안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본 추계에서는 민간위원이 12명 위촉되는 것으로 가정
 - 제정안은 해당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위원 수, 회의 개최횟수 등은 달라질 수 있음
 - 해당 위원회에 12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, 이들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20만원¹⁾씩 지급하며, 회의를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 - 추계기간 동안 단가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1) 기획재정부의 「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따르면,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,000원을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,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

- 추계결과, 시청각장애인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총 4,800만원(연평균 960만원)으로 추계

[표 5] 시청각장애인자문위원회 회의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(단위: 백만원, 명, 회)
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 계	연평균
단가(A)	0.2	0.2	0.2	0.2	0.2	1	0.2
인원 수(B)	12	12	12	12	12	60	12
개최 횟수(C)	4	4	4	4	4	20	4
합 계(A×B×C)	9.6	9.6	9.6	9.6	9.6	48	9.6

주: 실제 위원회 설치·운영비는 위원 수, 회의 개최횟수 및 부대경비 소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라.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(안 제21조)

- 제정안에 따라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보건복지부의 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” 사례를 준용하여 시청각장애인 지원센터를 1개의 중앙지원센터와 17개의 지역지원센터로 설치·운영하되, 지원대상 규모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 규모는 유사사례의 30% 수준²⁾으로 가정
- 인건비, 운영비, 자산취득비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고,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- (배치인력) 2025년 기준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13명,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총 163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므로, 본 추계에서는 지원대상의 규모를 고려하여 중앙지원센터에 4명, 17개 지역지원센터에 총 49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 - (인건비) 유사사례의 1명당 연간 인건비(2025년 기준 중앙센터 3,768만원, 지역센터 4,889만원)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
 - (운영비) 유사사례의 30% 수준의 운영비(2025년 기준 중앙센터 1억 2,300만원, 지역센터 5억 6,100만원)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

2) 2024년 기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주요 사업(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,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,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등) 이용자는 약 3만명으로, 시청각장애인이 1만명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유사사례의 30%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계함

- (자산취득비) 신규 배치 인력 53명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2028년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1인당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「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」(2020)에서 조사된 비용(420만원, 정부부처 기준)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산출

□ 추계결과,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총 194억 500만원(연평균 38억 8,100만원)으로 추계

[표 6]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명, 백만원)
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 계	연평균
중앙지원센터(1개소)							
인원 수(A)	4	4	4	4	4	20	4
1명당 연간 인건비(B)	42	44	45	47	49	227	45
인건비(C=A×B)	168	176	180	188	196	908	182
운영비(D)	131	133	136	139	141	679	136
소 계(E=C+D)	299	309	316	327	337	1,588	318
지방지원센터(17개소)							
인원 수(F)	49	49	49	49	49	245	49
1명당 연간 인건비(G)	55	57	59	61	63	295	59
인건비(H=F×G)	2,695	2,793	2,891	2,989	3,087	14,455	2,891
운영비(I)	595	607	619	632	644	3,098	620
소 계(J=H+I)	3,290	3,400	3,510	3,621	3,731	17,552	3,510
자산취득비							
인원 수(K)	53	-	-	-	-	53	11
1인당 자산취득비(L)	5	-	-	-	-	5	1
소 계(M=K×L)	265	-	-	-	-	265	53
합 계(E+J+M)	3,854	3,709	3,826	3,948	4,068	19,405	3,881

주: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 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강시온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시온	02-6788-4742	sionkang@nabo.go.kr